

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, 같은 법 제99조(과태료)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20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□ 행정처분 내역

상호명 (대표자)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행정처분	행정처분 사유	행정 처분일
(주)덕은 씨앤에이디자인 (오은주, 김덕환)	실내건축공사업 (서대문 19-01-02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82, 201호 (연희동)	과태료 부과 (50만원)	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[건설공사대장 미통보]	2024. 12.20.

끝.